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4년 12월 18일 ~ 2025년 1월 1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 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로지스(주) 2024년 제7차 직원 공개채용에 지원한 응시자는 2024년 12월 3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코레일로지스(주)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발송주소>

(우)04507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49 실로암빌딩 2층 코레일로지스(주) 채용담당자 앞

코레일로지스(주)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2월 1일까지 채용 관련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코레일로지스(주)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